

<p>(나) 공연장 (다) 숙박업 (라) 유기장, 오락장, 노래장 (마)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바)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사) 음식점 (아) 학원(독서실·고시원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자) 사진현상소 (차)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제외) (카)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타) 발전소 (파) 이발소(미장원 제외) (하)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거) 화훼, 식목업 (너)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더) 도살장, 정육점 (러)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앗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화공약품</p>	<p>품·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머)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버)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서)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어)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저)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쳐)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커)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효율 적용) (터)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퍼)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허)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고)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p>
---	---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12.
도시관리위원회

1. 경 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제출일자 : 1998.11.11

나.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

○회부일자 : 1998.11.17

다. 상정일자

○제16회 정기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98.12.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택국장:양 갑)

가. 제안이유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 삭제(안 제2조의2)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하는 토지